

# '87년도 종돈수입추천기준

- ..... 정부는 지난 3월 종돈 수입 요건을 대폭 강화시킨 '87년도 종돈수입추천기준을 마련, ..... ○
- ..... 시행키로 했다. .... ○
- ..... 정부가 발표한 '87년도 종돈수입추천기준에 따르면, 종돈의 수입은 등록종돈두수의 5 ..... ○
- ..... % 이내로 억제하고 수입상한선을 30두로 함으로써 종돈 수입을 사실상 어렵게 했다. .... ○
- ..... 또 정부는 수입종모돈은 수출국 정부가 인정한 능력검정에 합격한 것으로 한정하는 한 ..... ○
- ..... 편, 종빈돈과 수정란 이식돈, 정액 등의 수입요건도 크게 강화했다 ..... ○
- ..... 다음은 정부가 발표한 '87년도 종돈수입 추천기준 전문이다. <편집자 주> ..... ○

## 1. 수입종돈의 요건

- 가. 원종모돈 (原種牡豚) : 수출국 정부가 소정의 능력검정에 합격한 것으로서 국가 또는 국가가 공인한 혈통등록기관에 당대를 포함한 3대 이상의 계대등록을 필한 것.
- 나. 원종빈돈 (原種牝豚) : 당대를 포함한 3대 이상의 계대등록을 필한 것.
- 다. 수정란이식돈 (受精卵移植豚) : 수출국의 혈통등록 기관이 수정란 이식돈임을 증명한 것으로서 수정란 생산에 공여된 정자와 난자는 위의 “가” “나”항의 요건을 갖춘 돼지의 것일 것.
- 라. 임신원종빈돈 (妊娠原種牝豚) : 수출국의 혈통등록 기관이 위의 “나”항의 돼지에 “가” 항의 요건을 갖춘 돼지 또는 그 돼지에서 생산된 정액을 사용하여 수정시켰음을 증명한 돼지일 것.
- 마. 정액(精液) 수출국의 혈통등록 기관이 위의 “가”항의 요건을 갖춘 돼지에서 생산된 것임을 증명한 것으로써 한국종축개량협회의 정액기준에 적합한 것일 것.

## 2. 종돈, 수정란 이식돈, 정액 수입업체

- 가. 국·공립 종축생산기관
- 나. 종돈업 등록업체

## 3. 업체별 수입추천 한도

- 종돈등록 두수의 5%이내를 원칙으로 하고 상한을 30두로 하되 업체당 최소 수입단위는 1~5두 범위에서 추천함.
  - 다만, 국·공립종축 생산기관은 제외
  - 시·도지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증감
  - 종돈 등록두수의 5%를 초과 수입코자 할 경우 신청두수의 2배에 해당되는 자가보유 종빈돈을 도태하여야 함(도태확인 증명서는 시장·군수가 발행하며, 관세법 제28조 6에 의한 수입종돈 확인신청시 농림수산부에 제출하여야 함).

## 4. 수입추천서류

- 가. 상공부 고시 제86-23호 ('86. 6. 28)에 제시된 구비서류
- 나. 제1호에 제시된 수입종돈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수출국 증빙자료.